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30일

송정동장 인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미	김 *미 1977-12-28	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길 (화봉동)	직권말소 2023-10-30

